

● 중소기업부 공고 제2024-328호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예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을 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사건의 이관·처분절차 구체화, 용어정비 등을 통해 동 지침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제3조, 제7조)

- 용어정의 신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른 지방청의 접수·조사·처분 절차 마련 등

나. 조사개시 규정 신설 (안 제9조, 제19조, 부칙 제2조)

- 신고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사를 시작하도록 규정

다. 체계정비 (안 제6조부터 제30조)

- 사건처리 절차 순으로 지침의 목차·조항을 재배치

라. 처분절차의 구체화 (안 제22조부터 제29조)

- 법 위반기업에 대한 처분절차 및 조사공무원의 역할 구체화

마. 지방중기청장의 보고 의무 부여 (안 제24조부터 제26조, 제28조, 제30조)

-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기업에 대해 지방중기청장의 처분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 마련

바. 자문위원회 규정 삭제 (현행 제27조부터 제30조)

- 근거 법 조항이 없으며, 실효성이 미흡한 자문위원회 규정의 삭제

사. 자구 수정 (안 제2조 등)

- 요청인, 피요청인, 조사대상자, 당사자, 참고인, 분쟁조정 요청 등 법의 용어에 맞게 정비

아. 기타사항 (안 제5조, 제22조, 제29조)

- 기간의 계산, 처분의 사전통지, 처분의 송달 등의 규정을 민법·행정절차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반영·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불공정거래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전자우편(이메일) : ze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전화 : 044

- 204 - 79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